

충청북도고문번호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12. 13

나. 회부일자 : '97. 12. 15

3. 제안이유

- 법령질의 및 쟁송사건 증가로 고문변화사 업무 증대
-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하여 행정업무의 전문화 유도
- 고문변화사에게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제안하여 사명감 부여

4. 주요골자

- 고문변화사 위촉을 2인이내에서 3인 이내로 변경함
- 고문변화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
- 고문변화사의 업무에 도소송 대리를 추가하고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함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사회의 다변화와 주민의 욕구가 상응하는 데 발맞추어 각종 법령 질의 및 쟁송사건의 증가로 고문변호사의 업무가 날로 증가함에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첫째 고문변호사 수를 2인이내에서 3인 이내로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

둘째 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하며

셋째 도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수 없도록 해 사명감을 부여하여

행정업무의 전문화를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